

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[2004. 3. 11법률 제7188호로 공포]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요구됨

2. 관계법령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

3. 주요골자

가. 자문단의 기능(안 제2조)

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-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건축물, 교량, 터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

나. 자문단의 구성(안 제3조)

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다.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라.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(안 제5조)

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건은

-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. 3. 11부로 법률 제7188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, 발효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망 확보와 대응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 실현코자 함은
- 헌법정신에 비추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- 특히 관련법령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4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